

「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4.05.31 현재, 세전, 연)

구분	내용										
상품특징	퇴직연금 제도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기간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6개월, 1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가입 가능 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3.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1일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										
적용이자율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기간별 약정이자율										
중도해지 적용이자율	1.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1년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 이자율									
	1년이상	1. 경과기간 1년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2. 경과기간 1년이상: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2.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중도해지금리</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 미만</td> <td>연0.10%</td> </tr> <tr> <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 <td>연0.15%</td> </tr> <tr> <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 <td>연0.20%</td> </tr> <tr> <td>6개월 이상</td> <td>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단, 연0.20% 미만 시 연0.20% 적용)</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0.20%	6개월 이상
경과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단, 연0.20% 미만 시 연0.20% 적용)										
(주 1) 차등률 :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이상 9개월미만 경과시 60%, 9개월이상 11개월미만 경과시 70%, 11개월이상 경과 시 90% (주 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만기처리방법	DB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재예치									
	DC/IRP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합니다.)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일부해지	가능	1.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2. 분할 해지시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예금자보호	DC/IRP 대상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비대상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상품 가입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연금상품지원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는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코드: 예금상담 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상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 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현재, 세전, 연)

구분	내용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가입금액	1원 이상
계약기간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6개월, 1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가입 가능 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3.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1일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적용이자율	신규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음
만기이자율	신규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	1.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2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사유) 이자율

- 계약기간 1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 경과기간 1년 미만: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경과기간 1년 이상: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율

※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3. 단, 아래의 경우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적용된 이자율 적용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1. 일반 중도해지 이자율

경과기간	일반 중도해지이자율
1개월 미만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0.20% 미만 시 연0.20% 적용)

(주 1) 차등률 :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이상 9개월미만 경과시 60%, 9개월이상 11개월미만 경과 시 70%, 11개월이상 경과 시 90%

(주 2) 경과율 : 경과 일수/계약 일수 (단, 경과 일수는 계약 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약정이자율 × 약정개월수 ÷ 12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기 후 이자율 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은 없습니다.

만기처리방법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2)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p>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재예치시 계좌번호 변경됩니다)</p> <p>3) 전 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의사표시에 따라 정합니다</p> <p>4)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p> <p>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p> <p>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p> <p>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전 호에 따라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p>	
계약해지방법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지 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합니다.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분할해지	<p>1.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 가능.</p> <p>2. 일부 해지시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p> <p>3. 단,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일부 해지 횟수에서 제외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 가능</p>	
예금자 보호여부	DC/IRP 대상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비대상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통장발행	이 예금은 통장 발행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명의무위반 등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님에게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연금상품지원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는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서비스코드: 예금상담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